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「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」는 한강의 자연성을 존중하면서

접근성 강화, 매력도 증진, 도시활력 제고를 통해

한강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

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SH공사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.

○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근거 법령인 본 조례의 공사 사업범위에는

토지 및 주택 개발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,

조례 개정을 통해

한강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